

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

제정 2021.02.22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우송학원(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 20조의5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①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
②추천위원회는 본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또는 감사 추천을 요청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,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다.

제3조 (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 추천 위원 : 2인
2. 우송정보대학 대학평의회 추천 위원 : 1인
3. 우송대학교 대학평의회 추천 위원 : 2인

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추천위원은 본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.

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의 자격)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시 정관 제20조의2(개방이사의 자격)에서 정한 “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”로서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 등) ①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추천위원회 회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추천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간사) ①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간사는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